경제혁신 3개년 계획 / 대한민국 제도약의 힘, 창조경제

경 제 혁 신

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 도 자 료

희망의 대한민국

http://www.motie.go.kr

**2015년 9월 18일(금) 조간**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9. 17(목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문의 : FTA무역규범과 이경식 과장(044-203-5820) / 윤영범 사무관(5824)

# 농림축수산업 자유무역협정(FTA) 원산지 협상 방향 논의

## - 업계는 농림축수산업 특성을 반영한 원산지 기준 요청 -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9. 17.(목) 서울 무역협회에서 **농림축수산 분야**에 대해 지금까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(이하 **FTA) 원산지 규정 내용을 검토**하고 앞으로 **체결할 FTA에서의 협상방향을 논의**하기 위해 **「FTA 원산지 간담회**(이하 '간담회')」를 열었다.

○ 이번 간담회에는 유가공협회, 식품산업협회, 수산무역협회 등 농림축수산업 업종단체 담당자, 농촌경제연구원, 해양수산개발원 등 관련 연구기관, 관세 원산지 전문가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.

**< 「FTA 농림축수산 원산지 간담회」 개요 >**

◈ 일시/장소: '15.9.17(목) 13:00~15:00, 서울 무역협회

◈ 참석대상: FTA무역규범과, 유가공협회, 단미사료협회, 육가공협회, 전분당협회, 대한제당협회, 식품산업협회, 수산무역협회, 농촌경제연구원, 해양수산개발원, 관세 원산지 전문가 등

□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·중·일 FTA,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(RCEP) FTA, 한·중미 FTA를 앞두고 722개에 달하는 **농림축수산업 품목별 원산지 기준(PSR) 협상방안에 대해 논의**했다.



□ 농림축수산물의 원산지규정은 각국의 농림축수산 경쟁력을 바탕으로, 원산지 부여 여부에 대한 **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**하고 있는 분야이다.

○ **기초 농수산물**의 경우 **완전생산 기준(WO)**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으며,

○ **가공 농수산품**의 경우, **투입품과 산출물이 충분히 다른 성격**을 가지고 있는지와 **가공공정이 원산지를 부여할 정도로 포괄적인지를 기준으로 하여,** 수입재료의 **비율이 40% 내외이거나(RVC), 2단위 또는 4단위 세번변경**(CTC) 등이 논의되고 있다.

* 완전생산 기준(WO) : 전적으로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
** 세번변경 기준(CTC) : 수입되는 원료(input)의 세번과 완제품(output)의 세번을 비교하여 세번이 일정단위 이상으로 변하는 경우 원산지를 부여

□ 이번 간담회에서 농림축수산 업계 관계자들은 **FTA에서 원산지 기준은 농림축산품의 교역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**으로 합의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.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확인한 **농림축수산 업계 의견을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(RCEP) FTA, 한·중·일 FTA, 한·중미 FTA** 등 진행 중인 FTA 협상에서 **활용할 계획**이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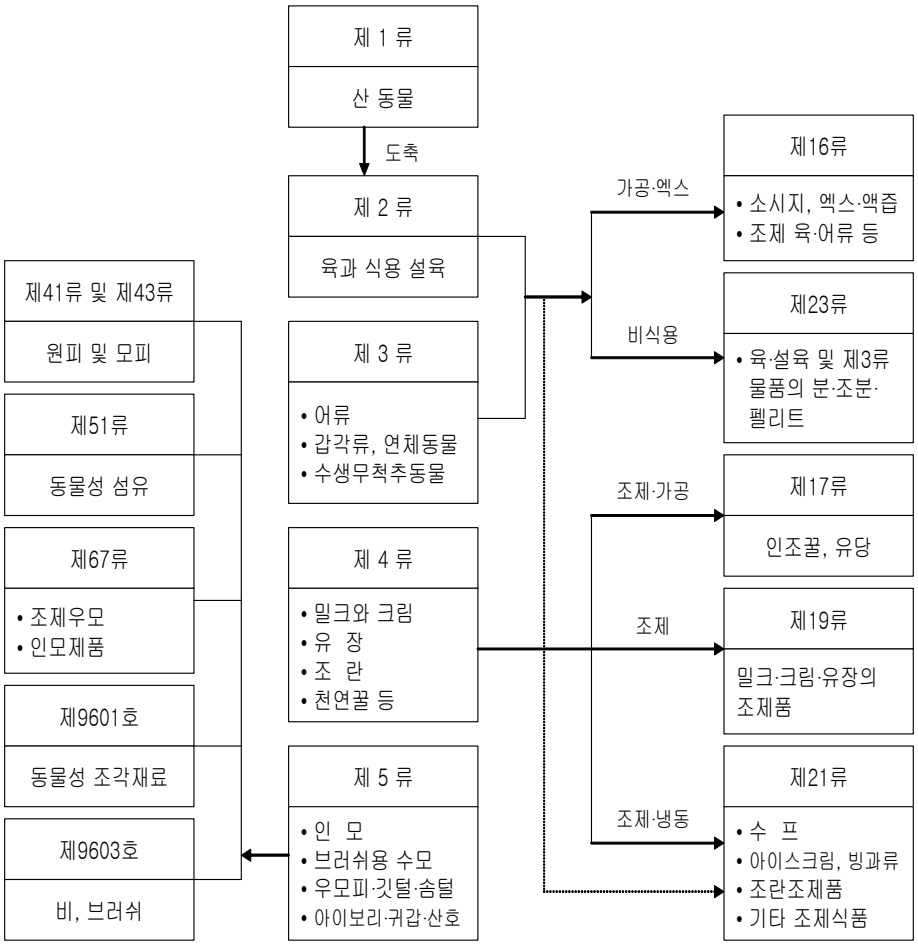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FTA무역규범과 윤영범 사무관(☎ 044-203-582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## 참 고 농림축수산 관련 주요 원산지 협상 대상

□ 농림축수산 원산지협상 대상은 **HS Code 1류 ~ 15류의 기초 농림축수산물과 15류 ~ 24류의 가공품**

* HS 6단위 기준 722개 품목임

**< 농림축수산 품목 분류 흐름도. I >**






□ 기체결 FTA의 원산지 기준은 **기초농수산물은 완전생산기준(WO**
**가공 농수산품의 경우 수입재료의 비율이 40% 내외이거**
**(RVC), 2단위(CC) 또는 4단위 세번변경**시(CTH)시 원산지 인정

**<주요 FTA별 농림축수산 분야 주요 원산지 기준>**